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99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관련 개정된<br>「국민건강보험법」 규정 준용 ..... | 3 |



## I. 개요

###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299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21.

(3) 회 부 일 : 2025. 8. 22.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 1회의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되었으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관련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준용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준용 조항에 제109조제11항을 추가하는 것임(안 제30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u>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u> 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br>-----<br>----- <u>제54조, 제109조</u><br><u>제10항 및 제11항</u> -----<br>-----<br>-----<br>-----<br>-----<br>-----.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0조<sup>1)</sup>는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sup>2)</sup>의 체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정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을 준용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삭제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런데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이하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을 내국인등과 달리 실시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보았으나,

개정 전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음.

-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내국인과는 달리 과거 보험료를 납부해 온 횟수나 개별적인 경제적 사정의 고려 없이 단 1회의 보험료 체납만으로도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체납한 보험료를 사후에 완납하더라도 예외 없이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평균보험료<sup>3)</sup>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불측의 질병 또는 사고·상해가 발생할 경우 건강에 대한 치명적 위협성에 더하여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임.

3)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4(보험료 부과·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경위, 체류목적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징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6조(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지역가입자로서 영 제76조의4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4호의 기준에 따른 세대 단위로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된 보험료[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제외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2. 제1호에서 “평균보험료”란 매년 11월의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세대주가 내국인인 세대와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세대를 말한다]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포함하며,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보험료는 그 다음 해 1월부터 12개월 동안 적용한다.

- 또한,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한 탈퇴를 불허하는 것은 단지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이들에게 사회연대원리가 적용되는 공보험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효과도 가지게 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등과 달리 취급한다는 것임.

□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건의 경우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고,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

□ 이에 지난 2024년 10월 해당 조항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신설하여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25년 4월 시행되었음.

- 개정법률에 따른 동법 시행령<sup>4)</sup>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도록 하되, 지역가입자인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① 공단은 법 제109조제11항에 따라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공단이 해당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로 인정하도록 함.

< 신구조문대비표 >

| 국민건강보험법<br>[법률 제20324호, 2024. 2. 20.,<br>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br>[법률 제20505호, 2024. 10. 22.,<br>일부개정]                                                                                                                                                                                                                                                                                              |
|-------------------------------------------------------------------------------------------------------------------------------------------------------------------------------------------------------------------------------------------------|----------------------------------------------------------------------------------------------------------------------------------------------------------------------------------------------------------------------------------------------------------------------------------------------------------------------------------------------|
|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⑨ (생략)<br><br>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u>보험료를</u>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br><br><u>&lt;신 설&gt;</u> |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br><br>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u>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u>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br><br><u>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u> |

□ 그러나 현행법 제30조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정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만을 준용하고 있어 개정안은 제11항도 준용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1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1회 체납만으로도 장기요양급여를 정지하고 있다는 설명임.

□ 다만,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이 2025년 4월부터 시행 중이라는 점,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에 대한 보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등의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

|              |
|--------------|
| 문 의 처        |
| 02)6788-5503 |